

제 호

교육훈련기관 지정서

1. 명 칭:

2. 대표자:

3. 소재지:

4. 교육훈련 분야:

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